

2025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

2025년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(BI)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0. 13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 지정

- 사업목적** :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하여 (예비)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
- 신청대상** :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
- 신청요건** :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,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

* 신청기관은 현장점검 완료일 전까지 지정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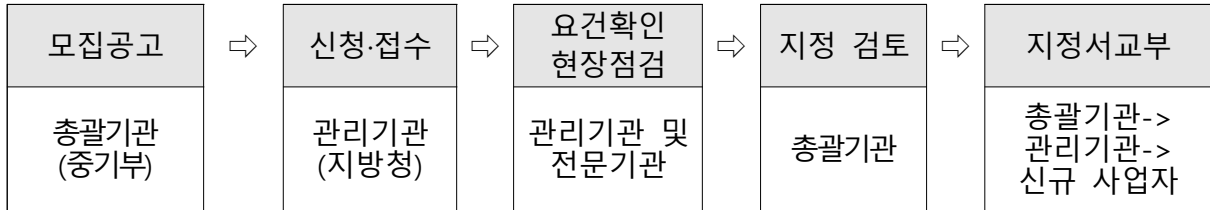
< BI 지정요건 >

- ①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m² 이상의 장소를 갖출 것
 - 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
* 전문인력 범위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별표2 참고
 - ③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보유
 - ④ 창업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적합할 것
- ※ 지정요건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 참고

□ **지원내용**

- “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서”를 발급하고 해당 창업보육센터에 세제 혜택 및 소속 입주기업에 사업화 등 지원

□ **지정 절차**



2 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기간** : 2025.10.20.(월) ~ 11.10.(월)

□ **신청방법** :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

* 신청 후 유선으로 접수내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.

□ **제출서류** : BI 사업자 지정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
구 분	제출서류
BI 신규 사업자 지정	① BI 지정(변경) 신청서 ② BI 사업계획서 -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 경우에만 해당) - 전문인력 보유현황(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) - 장비 확보 증빙서류(시설명세서 등) - 공간 확보 증빙서류(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 계약서 등) - 지역의 창업수요, 운영성과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(자체양식)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* 사업신청서 등 제출자료는 [붙임] 참고

3**추진일정** **심사 및 선정**

-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: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확인 및 현장점검 후 지정 여부 결정하여 본부로 추천
- 신규 사업자 지정 : 현장점검 결과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지정

 현장점검 일정 : 2025.11.17.(월) ~**4****기타사항** **문의처**

<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>

지방청	연락처	지방청	연락처
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2-2110-6366 yoonjm123@korea.kr	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41-415-0631 skyjih13@korea.kr
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51-601-5150 sshssw99@korea.kr	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52-210-0043 danbi5396@korea.kr
대구·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53-659-2205 dlwldud11@korea.kr	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33-260-1633 cgy1213@korea.kr
광주·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62-360-9136 cyj376@korea.kr	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43-230-5376 ssha08@korea.kr
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31-201-6906 officialdoo@korea.kr	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63-210-6456 banggun@korea.kr
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32-450-1155 kjgtr0425@korea.kr	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55-268-2555 eunjin131@korea.kr
대전·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	042-865-6146 gtkim2006@korea.kr		

 붙임 :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. 끝.

[붙임]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

창업보육센터사업자 [] 지정
[] 변경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대표자 성명		
	설립 연월일		전화번호		
	주소				
창업보육센터	명칭		대표자 성명		
	주소				
	전화번호		보유기관 유형		
	규모	센터 연면적 ()㎡		창업보육실 면적 ()㎡	
변경사항					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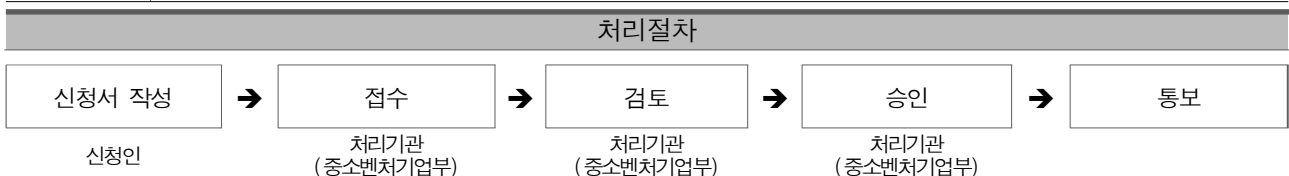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전문인력 보유 현황 1부 4. 시설 명세서 1부 5.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변경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
(법 제53조제1항제3호 관련)

I. 사업자 현황

1. 사업자개요

- 명칭 : 사업자 및 센터 명칭을 기재
- 대표자 : 대표자 성명을 기재(이력서 별도첨부)
- 소재지 : 주소 및 연락처 표기
- 설립 및 등기일자
- 주요사업 내용

2. 자본금 및 출자방법 (비영리법인인 경우 제외)

- 자본금 (수권 및 납입자본금)
- 발행주식의 종류, 수량, 주당가격
- 출자방법
-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
- 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별도첨부

3. 조직 및 임직원 현황

가. 조직

- 조직도
- 부서별 기능

나. 임직원 현황(외부전문인력 포함)

- 직위, 성명, 생년월일, 학력, 경력, 자격취득 현황 및 주요업무내용 등 작성
- 전문인력은 상근 여부를 추가 기재하고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와 이력서를 별도제출

II. 사업계획

1. 사업의 목적 및 중점추진방향
 - 지역의 창업 수요 전망, 특화 분야 및 중장기 운용계획 포함
2.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소유형태
3. 주요사업계획의 추진일정
 - ※ 주요사업별로 향후 5년간 계획을 작성
4. 창업보육센터의 위치, 입지여건 및 건립계획
 -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, 용도지정 현황 포함(도면, 사진 첨부)
5. 창업보육센터의 구조·시설·장비 보유 현황 및 확충계획
 - 시설장비는 제원 및 용도를 명기 (도면, 사진 첨부)
6. 전문인력 보유·활용 현황 및 확충계획
 - 입주기업 보육을 전담할 매니저 확보 계획 또는 현황 포함
7. 당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입주수요
 - 주요 입주대상, 입주기업 선정방법 및 입주기간 포함
8.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계획
 -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, 분석·가공 및 공급계획 포함
 - 협력기관과의 장비·인력지원등 업무제휴 현황 및 계획 포함
(근거자료 별도제출)
9. 졸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
10. 창업보육센터 재정자립 운영 로드맵 계획
 - 수익창출 계획, 연차별 재정자립도 달성목표 등을 포함
11. 자금수요 및 조달계획
 - 관리비·사용료 징수계획 포함
 - 재무제표, 수익·비용명세등 별도제출
 - 향후 5년간 연도별 수지전망 포함

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

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별표 2])

경 영 분 야	기 술 분 야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.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4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.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.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.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. 국·공립 연구기관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* 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

※ ⑦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1. 이공계열·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2.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
3.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, 기관,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
4. 변리사,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중소벤처기업부는 「창업보육센터 지정」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1항, 제33조 제1항 제2호,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수집·이용 목적

- 「창업보육센터 지정」과 관련한 평가 및 사업의 운영·관리

수집·이용할 항목

- 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전화번호, 소속, E-mail, 직위, 휴대전화)

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목적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(신용)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정보	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 (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)
------	---

20 년 월 일

성명 : _____ (서명)